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3. 6. 25.)에서 의결된 전라북도학생인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 전라북도교육감

2013년 7월 12일

전라북도 조례 제3781호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 2 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3. "교직원"이란「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 의 직원,「유아교육법」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을 말한다.
-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 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 "학생의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 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 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 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 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인권

####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 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 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 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 다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하다.
-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 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야 한다.
-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 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 리를 가지다
  -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 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자·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 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 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 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 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 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 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 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 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 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 니 된다.
-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 제1절 인권교육

- 제28조(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있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9조(홍보) 교육감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육용 자 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실습, 학생노동활동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 학습 및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31조(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와 지원) ①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 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의 인권교육과 교직원 연수를 위한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32조(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① 보호자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교육과 관련하여 교직원에 대하여 상담을 요구할 권리를 가 진다.
  - ②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 회를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3조(인권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전라북도 내 학생인권 실태

- 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인권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34조 (인권 모니터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 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는 데 필 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인권 등의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④ 실천계획에 대해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6조(학교별 평가와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학교별 학생 인권 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7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민간단체 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 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 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 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절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 **제39조(학원, 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과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5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 제40조(전라북도 학생인권 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전라북 도교육청의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 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의초하다
-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개모 집 절차를 통해 신청한 자
- 4. 전라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 3. 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
  - 4.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인권옹호관이 제안한 사항
- ⑥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5항 각 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 에 위임할 수 있다.
- 제41조(전라북도 학생 참여위원회) ①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학생참여위원회(이하 '학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생위원회는 교육감이 위촉하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학생위원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학생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1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위촉할 수 있다.
  - ④ 학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인권 실현과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2조(학생인권 교육센터)** ①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둔다.
- ②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3조(인권옹호관) ①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하여 인권옹호관을 둔다. 그 구성 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인권옹호관은 상임 1인으로 하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③ 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4조(겸직금지) ① 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인권옹호관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 한다.
  -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표
  - 7. 학생 인권교육
  -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제46조(사무국) ① 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기획.정책의 수립, 인권침해의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둔다.
- ③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7조(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

- 제48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 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 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 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50조(조사) ① 인권옹호관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자료를 요 청할 수 있고,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 ② 인권옹호관은 제49조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와 질의, 제2항의 현장방 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2013. 7. 12 조례 제3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에 대한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는 제47조의 규정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